##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66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김성원·고동진·김선교

이종배 · 정동만 · 김정재

박충권 · 임이자 · 박성훈

김태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국가보훈부가 한국경영인증원에 위탁해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경영인증원은 인증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채용인원과 고용 안정성, 고용환경 등을 평가한 후 심의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임.

하지만,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이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함(안 제16조의2).

#### 법률 제 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등의 인증"을 "기업등의 지정"으로,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을 각각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을 각각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를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u>인증</u> ) ① 국가보훈부	기업등의 <u>지정</u> ) ①
장관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	
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	<u>기업등의 지정고용우수</u>
<u>기업등인증</u> "이라 한다)을 할	<u>기업등지정</u>
수 있다.	
② 기업등은 고용우수기업등인	②고용우수기업등지
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u>정을</u>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3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업등에 국가보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우수	<u>고용우수</u>
<u>기업등인증의</u> 표시를 하거나	<u>기업등지정의</u>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
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
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u>인증을</u>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u>인증</u>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
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
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고용우수기</u>
업등인증의 기준·절차, 유효기
가. 지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